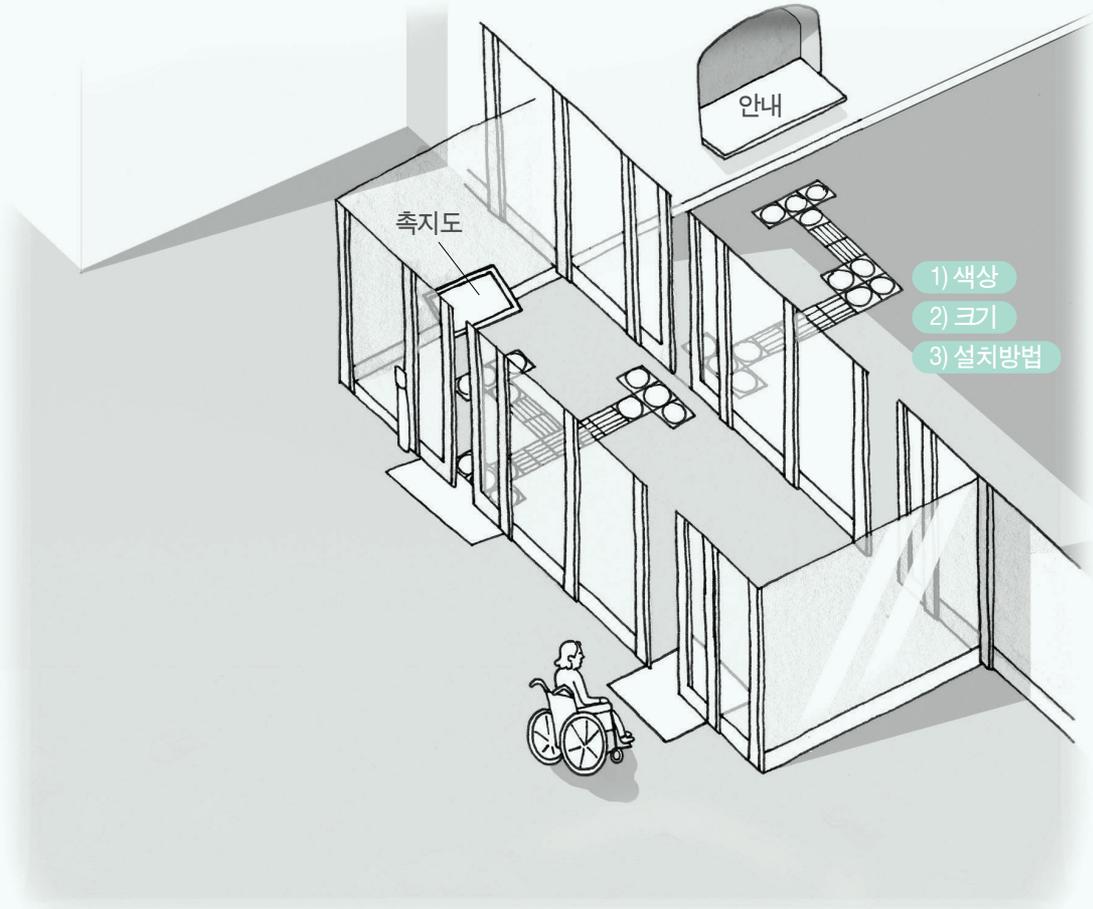


## 13.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 ■ 설치원칙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방향을 유도하거나 위험 등을 알려주는 주의환기용으로 적합하다.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점자블록의 설치보다는 바닥재질, 색상, 질감차이 등으로 점자블록을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설치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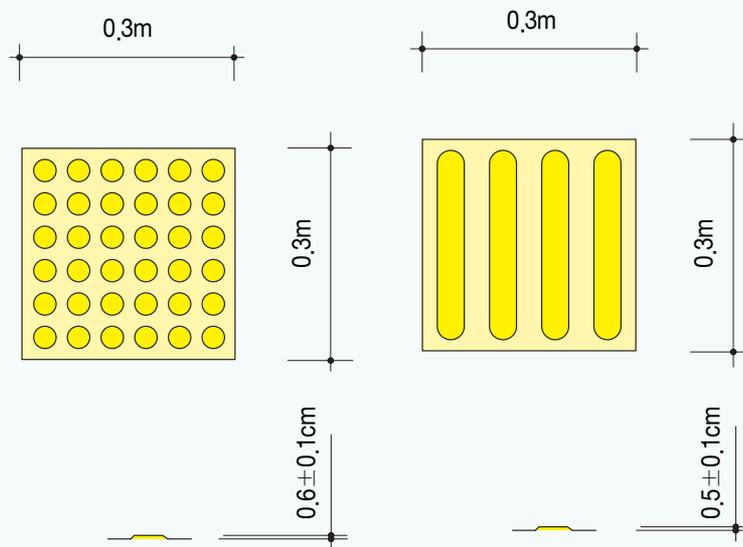
- 색상, 질감의 차이, 손잡이 등 주변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한 건물 내에서는 통일된 방법으로 설치한다.
- 추락위험이 없거나 벽면으로부터 유도가 가능한 실내에는 유도블록 이외의 방법으로 유도 또는 경고표시를 한다.
- 유도는 흰지팡이 또는 주변색과의 차이 등으로, 경고 또는 주의환기는 발로 밟을 때 질감의 차이 등으로 구분하는 특성과 동작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 1) 색상

- 황색 계열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색과 조화되는 바닥재의 색상 중 명도의 차이가 크고 구별하기 쉬운 색으로 한다.

## 2)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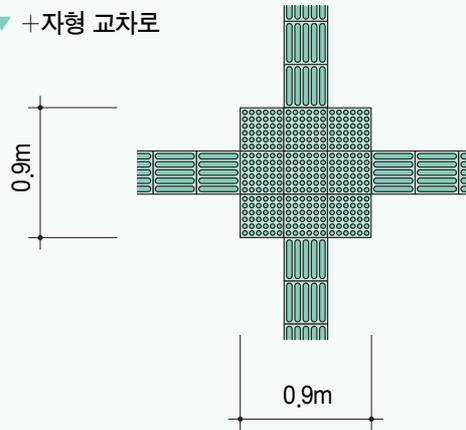
- 0.3m×0.3m 크기를 표준형으로 한다.
- 선형블록의 돌출선과 점형블록의 돌출점의 높이는 0.5cm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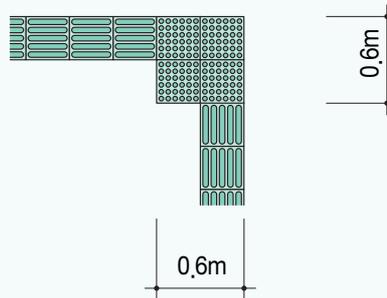
3) 설치방법

- 유도블록 좌우 0.9m 내에는 보행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 유도블록 좌우에 0.9m 폭의 장애물 없는 통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0.9m~1.2m 폭의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 이 경우 보행안전통로를 주변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의환기용 경고블록은 방향전환지점, 위험물 주변, 계단, 경사로 등의 시작과 끝지점, 승강기 조작판 전면 등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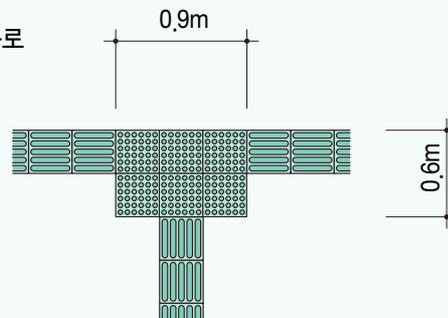
▼ +자형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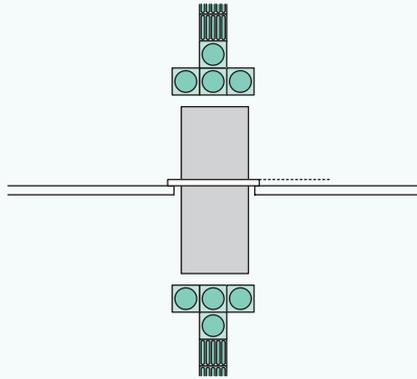
▼ L자형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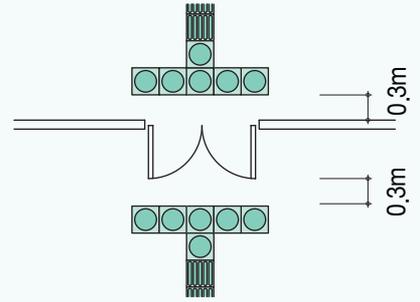
▼ T자형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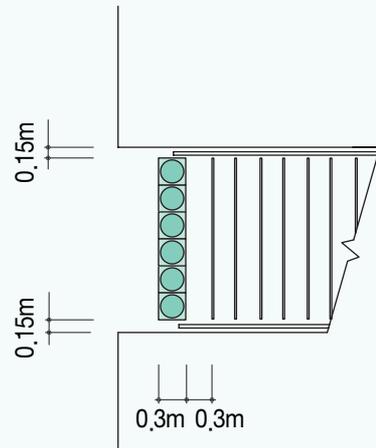
▼ 자동문



▼ 여닫이문



▼ 계단



▼ 승강기

